

자료②/2003년 일본도서관계 주요토픽 (2003●トピックを追う)

일본도서관협회도 매년 12월 그 해의 주요한 사건을 정리하여 기관지에 발표하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해 일본 도서관계의 당해연도 고민의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2003년도의 주요 토픽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수준과 내용이 다르고, 이에 따라 도서관 정책과 제도, 운영수준 등 또한 다르다. 따라서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의 현실에 대입하거나 적용하는 일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 편집실

■ 도서관의 관리운영: 지정관리자 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법 중 공립시설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3년 9월 2일부터 「지정관리자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설치자인 각 교육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직접 관할방식, 개정전의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리위탁제도, 개정후의 지정관리자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관리운영은 직접 관할방식과 법인 위탁방식이었다. 또한, 청소나 경비와 같은 업무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관할하는 방식이 늘고 있으나, 조례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위탁업자는 1/2 이상의 출자법인과 공공단체에 한정되며 권력적 색채가 짙은 관장업무 등은 위탁 불가라는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정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 위탁업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며 모든 업무가 위탁대상이 된다. 또 지방공공단체는 유예기간인 3년 안에 지정관리자 제도와 직접 관할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 사서교사의 발령상황

1997년 학교도서관법의 개정으로 2003년 4월부터 12학급 이상의 학교에 사서교사의 배치가 의무화되었다. 법 시행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약 42,000명의 사서교사가 양성되었고, 2003년에는 12학급 이상의 거의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었다.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학교도서관정비추진회의가 3,190개 市·町·村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03년 6월 현재 초등학교 7,551교, 중학교 3,274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었다고 한다. 또, 교직원조합의 조사에 의하면 동년 6월 현재 사서교사의 발령률은 12학급 이상 의무제 학교가 평균 98.5%, 고등학교가 79.9%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사서교사는 먼저 교사로 발령받은 자여야 하므로 학급담임이나 교과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사서교사의 교과목 수업시간을 경감시킨 학교는 매우 적으며 전임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도 적은 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다.

■ 최근의 학교와 학교도서관의 동향

2001년 말에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 2002년 「신학습 지도요령」의 전면 실시, 2003년 4월 사서교사의 필수 배치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초등·중학교에서는 주 5일제 수업 실시, 「종합적인 학습시간」의 도입으로 수업내용을 30% 삭감하는 이른바 「여유 교육」이 시작되었다. 문부과학성은 학력저하와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비판을 받아들여 「신학습 지도요령」의 개정을 위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종합적인 학습시간」은 교과서가 없고 학습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예외적인 교과이므로, 당연히 「조사학습」이 중시

되어 학교도서관 이용의 활성화가 기대되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실제로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한다. 한편, 사서교사 배치 현황은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명한 데 불과하며, 수업부담을 비롯한 교무분장은 종래와 다를 바 없고 오히려 학교도서관 활동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 鎌倉(카마쿠라)시의 도서관 이관문제

鎌倉市를 중심으로 도서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비영리단체인 「도서관과 친구들 · 鎌倉」는 도서관을 관할하는 생애학습부가 교육위원회에서 시장 부국으로 이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2003년 11월에 이 비영리단체는 직접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두 번의 학습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회, 매스컴을 대상으로 홍보 및 요망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관중지를 요구하는 서명활동, 일본도서관협회의 성명 등에 힘입어 이관 저지에 성공하였다.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는, 공립도서관은 독립행정기관인 교육위원회 속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 시민이 원하는 도서관상의 확립, 도서관인과의 깊은 신뢰관계의 형성을 들 수 있다. 6월에는「神奈川(카나가와)의 도서관을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현(縣) 수준의 친목회를 결성하여 지사에게 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지사의 회답문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 本間一夫(혼마 카즈오)의 서거와 점자도서관

日本盲會(맹인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남기신 本間一夫 선생의 서거를 계기로 점자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점자도서관은 점자·음역도서의 제작과 무료우송에 의한 대출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료제작은 주로 점자·음역 전문가인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자도서관은 법제상, 1950년에 제정된 신체장애인복지법 속에 사회교육시설이 아닌 복지시설로서 자리매김되어 있다. 법조문에는 자료제작에 관한 규정은커녕 대가지불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자료제작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지도육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으면서도 그 임무나 법적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60여년 동안 점자도서관의 자료제작을 자원봉사자에 의존해 온 것은 지극히 커다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의 과제는 점역·음역과 같은 자료제작을 자원봉사자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적 비용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

<출처 : 일본도서관협회 “圖書館雜誌” 2003년 12월호(Vol. 97, No. 12) 838~849쪽,

요약번역 : 조재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